

과태료의 부과기준 (제5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다. 1개의 위반행위 또는 사유가 2개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.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
가. 법 제6조의 조합의 겸업 금지 또는 법 제39조의 조합 상임이사의 겸직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	법 제65조제1항제1호	250	350	500
나.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주상호보험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	법 제65조제2항	250	350	500
다. 법 제12조제2항과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가입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않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	법 제65조제1항제2호	250	350	500

라. 법 제1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「상법」 제364조, 법 제4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「상법」 제364조 또는 제3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회를 소집하거나 총회를 소집하지 않거나 정관에서 정한 지역 외의 지역에서 총회를 소집한 경우	법 제65조제1항제3호	250	350	500
마.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초서류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때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	법 제65조제1항제4호	250	350	500
바.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	법 제65조제1항제5호	250	350	500
사. 법 제43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「보험업법」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법 제45조제1항 및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「상법」 제4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	법 제65조제1항제6호	250	350	500
아. 정관, 조합원명부, 의사록, 재산목록, 대차대조표, 사업계획서, 사업보고서, 사무보고서, 법 제4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「상법」 제29조제1항의 장부 또는 법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「상법」 제540조제1항의 결산보고서에 기록할 사항을 기록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록한 경우	법 제65조제1항제7호	250	350	500
자. 법 제4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「보험업법」 제60조를 위반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	법 제65조제1항제8호	300	500	
차. 법 제4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「보	법 제65조제1항제9호	300	500	

<p>험업법」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의 계상을 하지 않거나 이를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경우</p>				
<p>카. 법 제47조에서 준용하는 「보험업법」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산 절차를 밟은 경우</p>	법 제65조제1항제10호		500	
<p>타. 법 제4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「보험업법」 제72조제1항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조합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</p>	법 제65조제1항제11호		500	
<p>파. 법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「상법」 제254조를 위반하여 파산선고 신청을 게을리한 경우</p>	법 제65조제1항제12호		500	
<p>하. 청산의 종결을 지연시키기 위해 법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「상법」 제535조제1항의 기간을 부당하게 정한 경우</p>	법 제65조제1항제13호		500	
<p>거. 법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「상법」 제536조를 위반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</p>	법 제65조제1항제14호		500	
<p>너.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</p>	법 제65조제1항제15호	250	350	500
<p>더. 법에 따른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</p>	법 제65조제1항제16호	250	350	500
<p>러. 행정관청 또는 총회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</p>	법 제65조제1항제17호	250	350	500
<p>머. 법에 따른 공고·통지·보고 또는 신고를 부정하게 한 경우</p>	법 제65조제1항제18호	250	350	500
<p>버. 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의 열람·복사,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</p>	법 제65조제1항제19호	250	350	500
<p>서.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법원이 선임</p>	법 제65조제1항제20호	250	350	500

한 청산인에게 사무를 인계하지 않은 경우				
어. 법에 따른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	법 제65조제3항제1호	150	200	300
저. 법에 따른 공고·통지·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	법 제65조제3항제2호	150	200	300
처.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 또는 감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그 선임 절차를 게을리한 경우	법 제65조제3항제3호	150	200	300